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6
----------	-------

제출년월일 : 2004. 3. 31.

제출자 : 파주시장

☐ 개정이유

-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공연 유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파주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경영위탁 대상을 시민회관 일부에서 시민회관 전체로 함.(안 제7조제1항)
- 시민회관 관람료 징수에 의한 사용료를 전체수입액의 30%에서 10%로 하향조정 (안 제15제4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시민회관의 일부를”을 “시민회관을”로 한다.

제15조제4항중 “사용료에 갈음하여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을 “사용료와는 별도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등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경영위탁)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시민회관의 일부를</u>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수 있다. ②~③(생략)	제7조(경영위탁) ①----- ----- <u>시민회관을</u> ----- ----- ②~③(현행과 같음)
제15조(관람료등)①~③(생략) ④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u> 같음하여 당해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u> 징수한다.	제15조(관람료등)①~③(현행과 같음) ④----- -----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u> <u>와는 별도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u> ----- ----- [삭 제]

관 계 법 령 발 췌 서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3.7.18 법률 제06927호)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년도 사용료 징수실적

구분	총이용건수		기본사용료		특별사용료		무료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총계	574	42,420	163	31,711	24	9,709	387(67.4%)
대공연장	191	9,170	43	8,796		374	147(76.9%)
소공연장	197	31,502	89	21,167	23	10,335	85(43.1%)
연회장	103	1,141	27	1,141			76(73.8%)
전시장	83	607	4	607			79(95.2%)

도내 문화시설 관람료 현황

시군명	관람료현황		시군명	관람료현황	
	징수율	대상시설		징수율	대상시설
파주시	30%	시민회관	군포시	없음	문예회관
수원시	10%(오락30%)	시민회관	의왕시	없음	복지회관
성남시	10%(오락30%)	시민회관	하남시		
의정부	대중공연만10%	예술전당	고양시	20%	문예회관
안양시	영화만 30%	시민회관	용인시	20%	문예회관
부천시	없음	시민회관	이천시	없음	시민회관
광명시	없음	시민회관	양주시	15%	문예회관
평택시	25%	문예회관	포천군	10%	반월아트홀
동두천	30%	시민회관	여주군	30%	세종국악당
안산시	없음	올림픽기념관	화성시		
과천시	10%(오락30%)	시민회관	광주시	30%	문예회관
구리시			연천군	없음	군민회관
남양주			가평군	30%	문예회관
오산시	20%	시민회관	양평군	30%	군민회관
시흥시			안성시	30%	시민회관
			김포시	20%	시민회관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3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공연유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파주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회관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경영위탁 대상을 시민회관 일부에서 시민회관 전체로 함.
(안 제7조제1항)
- 시민회관 관람료 징수에 의한 사용료를 전체수입액의 30%에서 10%로 하향조정. (안 제15조제4항)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회관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인하기 위한 것임.
- 금번 인하 하고자하는 사용료는 시설의 사용자가 관람자들로 부터 징수하는 관람료 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 징수하던 것을 관람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본시설 사용료는 변동이 없음.
- 관람 사용료를 하향조정 하고자하는 것은 그동안 공연기획자 등 사용자들로부터 시민회관의 시설이나 규모에 비해 사용료가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지난해 대관실적이 대공연장 1회, 소공연장 23회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나 각종 행사의 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료의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개정으로 사용료를 하향조정할 경우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많은 문화예술 행사의 유치와 공연기회의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나간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됨.

- 한편 경기도내 자치단체의 사용료 징수실태를 확인한바 재정력이 풍부한 대도시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거나 관람료 수입의 10%수준을 징수하고 있으며 비교적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는 15% - 30%수준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 참고적으로 2003년도 시민회관에서 징수한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187회 42,420천원(무료사용 제외)의 사용료를 징수한바 있음.